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3. 24.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3월 24일(수) 14:00~20:17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2021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2) 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68호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주)○○○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원래 (주)○○○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상에 중국내 종속회사의 중국내 거래처의 채권채무 조회서 회신 지연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의견거절'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음.

○ (위원) '의견거절'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69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7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난 증선위 때 보고되었던 시행령(안) 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 (보고자) 일부 시행령에 있었던 내용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규정으로 내리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나 내용 측면에서는 변경된 것은 없음.

○ (위원) '개인대주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규제 완화' 아래 박스에 보면 '[신용공여 계산방식(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개선방식도 금투업 규정에 들어가는지?

- (보고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개별적인 신용공여 유형별로 한도뿐만이 아닌 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방법까지도 금융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위원)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사항 공매도 이후 증자에

참여한 경우 과징금 부과비율을 50~150%로 정하셨는데 불법공매도 같은 경우 최대 상한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있는데 부과비율을 더 높여도 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법에서 공매도 이후 증거에 참여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부당이득의 1.5배 두고 있는 반면, 불법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내로 정하고 있어 100분의 100으로 정한 것임.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1호 『○○○○○○○○○○(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000씨가 경영권 참여목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건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인지?

- (보고자)현재 1대주주가 ■■■.■■■%의 지분이어서 000씨가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음.

○ (위원) '단순 투자목적'에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한지?

- (보고자) 5%보고인데, 보유목적 변경 보고를 하면 됨.

○ (위원) 보고서만 제출하면 5일 뒤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장내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대주주 변경 승인 후에 매입하는 것에 무슨 기간제한이 있는지? 향후 장내거래를 통해 계획 대비보다 주식을 매입 못했을 경우나 혹은 이보다 추가적으로 더 매입했을 경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본 건 대주주 변경승인 이후 승인 신청 받은 지분율을 6개월 이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승인받은 지분율보다 초과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를 넘어가면 본 건 승인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2호 『한국산업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변경기간이 변경일로부터 '25년말까지('21.3.31.~'25.

12.31.)'인데 이렇게 변경기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 (보고자) 산업은행은 CP나 기업유동성지원기구에 실제 회사채 사모 주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공급 중 가장 기간이 긴 것이 2025년 12월말에 종료되어 제한을 한 것임.

○ (위원)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업무대상도 제한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는지?

- (보고자) 일반기업에 대한 회사채 주선 업무는 제한적으로 할 예정이므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담보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모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과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3호 『한국아이엠씨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아이엠씨증권이 인가를 받으면 한국거래 시장에서 시장조성 업무만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장조성 업무만을 수행

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있는지?

- (보고자) 외국계 3사가 2020년에 시장조성 업무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음. 이렇게 시장조성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사는 본 건이 최초 사례라고 보시면 됨.
- (위원) 1월13일에 예비인가가 되고 시장조성 업무와 관련한 영업환경은 어떠한지?
 - (보고자) 시장조성자에 대해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어 있었는데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4월부터 면제가 없어져 상당히 시장에는 영향을 줄 것 같음.
- (위원) 예비인가 받고 본인가 받아 영업을 하려는 그 사이에 환경이 열악해진 것인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 (보고자) 아이엠씨증권의 설립자본금이 100억 원인데 최근에 한 80억 원을 추가로 증자해서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보고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신문에 철수한다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으나, 철수계획은 아직 없고 거래세 면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하지만, 본인가만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조성자 모집할 때 신청을 해서 일단 영업은 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4호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5호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 법률대리인임. 먼저,
본건 총액인수수수료가 발생한 펀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
해 말씀드리겠음. 프로젝트 펀드는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설정된 펀드임. 총액인수와 프
로젝트에 대한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산
취득까지의 과정이 일괄적·연속적으로 발생함. 거액의 투
자 건에 있어 일시적인 자금조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증
권사가 먼저 수익증권을 총액인수하게 되고 펀드는 총액
인수의 대가로 인수증권사에 총액인수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증권사의 인수대금은 펀드로, 펀드에서는 투자자산으로 투입되게 됨. 금감원은 펀드가 지급하는 총액인수수료는 인수 당시에 일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회사는 선급비용으로 한 후 펀드에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존속기간 중 이연상각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차이가 있고 이것이 본 건의 쟁점임.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총액인수 시점에 손실이 한 번에 잡히고 이연상각하는 경우 펀드 존속기간 동안 손실이 안분되게 됨. 먼저, 총액인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서 등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 따라서 발생주의회계원칙이나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프로젝트 펀드에 있어 총액인수와 펀드 설정·운용은 모두 특정자산 취득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여 있음. 따라서 '하나의 단위'로 평가되어야 함. 총액인수 수수료는 투자자산 취득이라는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임. 따라서 총액인수로 인한 비용과 펀드 운용에 따른 수익은 하나의 단위이며, 총액인수 수수료는 펀드의 수익인식과 같은 시기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먼저, 총액인수 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부합할 수 있음. 비용은 현금의 지출 시점이 아니라 효익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함. 프로젝트 펀드에 있어 총액인수 자체는 경제적 효익이 없음. 그 후 펀드 설정 및 운용행위와 결합되어야만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므로 총액인수 수수료도 펀드 존속기간에 대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총액인수와 펀드 설정·운용은 하나의 단위로써 처리되므로 총액인수수료는 펀드 운용기간 동안 이연상각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는 방식일 수 있음. 총액인수수료는 보험계약체결 관련 비용인 '신계약비'와 유사하여 신계약비처럼 이연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사는 판단하였음. 신계약비는 보험체결 시점에 보험모집인 수당 경비, 영업소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총액인수 시점에 펀드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 투입된 비용인 총액인수수료와 성격이 동일함.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 금감원도 대출 부대비용을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였고, 회사는 총액인수수료도 이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임. 이러한 유사사례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을 법령위반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총액인수수료가 투자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은 세무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음. 금감원에서는 회계기준원의 신속질의 회신의 내용을 본건 지적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질의회신에서는 자산취득과 펀드 설정·운용의 관련성이라는 본건 펀드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신속질의 회신 자체가 회계기준원 직원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회신을 근거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과태료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임.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본건 회계처리를 범위만으로 단정을 지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검사 및 제재규정에 의하면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자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설혹 본건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의거해서 한 개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발생한 수 개의 행위이므로 한 건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건 회계처리는 투자자나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고, 회사가 어떠한 위법한 의도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님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위반동기를 '고의' 또는 '중'으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때의 행위였던 점을 감안해 주시어 '고의' 또는 '중'으로 판단하는 위반동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서도 본건 검사 이후인 20××년 ×월에 한국회계기준원에 총액인수수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을 볼 때 당시로서는 검사국에서도 명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대해 고의로 판단하시는 것은 가혹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본건 투자자는 소수의 기관투자자이고 폐쇄형인 만기보유펀드임. 비용인식 시점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음. 이러한 점도 본건 판단에 있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액인수수료 인식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펀드의 사업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선급비용으로 이연상각하는 방식이 수익-비용 대응원칙과 경제적 실

질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본건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인지, 개선 등 비침익적 방식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고의가 전혀 없는 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과태료를 경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인 것 같음. 첫 번째, 총액인 수수수수료 인식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왜 제재를 하느냐인데 금감원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입장임. 금감원은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회사는 금감원 답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저희 쪽에서는 자본시장법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회계처리기준이 제정의 위탁) 이 부분이 회계기준원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 (진술인) 저희로서는 이연상각하는 방식과 일시 비용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회계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본시장법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항은 될 수 있는데 본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음.

- (보고자) 회계기준에서 개별 계정과목에 세세하게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는 없음. 그래서 회계처리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2017년 7월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비용처리하도록 기존에 정해져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미 안내를 한 바가 있음.
- (위원) 금감원 보고서에 감독행정작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구두로 보고하실 때 행정지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인지?
- ▶ (진술인)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일반원칙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음. 행정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치안을 열람했을 때 금감원 검토의견에서는 행정지도는 본건 조치의 기준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음. 그리고 행정지도의 내용에 따르면, '펀드투자자 모집·주선 등 판매행위와 연관된 자문수수료는 부동산 등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발생 즉시 비용처리'라고 되어 있음. 여기에 '총액인수수료'라는 표현은 전혀 없고 '부동산 등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 비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등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생각하고 있어서 본 행정지도의 내용은 저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임.

○ (위원) 금감원에서는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이고 회사 측에서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본 안건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실제 어떤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는지 양측이 상충되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행정지도에서 총액인수수료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당시 행정지도의 취지가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에서 모집과 관련된 각종 자문수수료 등이 과대하게 지급되고 이것이 이연상각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 기준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 모집과 관련된 수수료는 자산구입에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 즉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임. 물론 총액인수수료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이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을 보면 충분히 총액인수수료에 대해서도 일시 비용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 한편 저희가 행정지도 위반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 계정과목 별로 세세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준수되지 않는 부분을 별도의 행정지도로 업계에 준수하도록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령위반으로 지적하는 것임.

○ (위원) 지금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 말고 이 안건 이전에 이러한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 (보고자) 총액인수수료 본 건과 관련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사례는 없었음.

- (위원) 자산운용사가 아닌 다른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있었는지?
 - (보고자) 없었음. 금융업계 외에는 총액인수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건과 동일한 위반사례는 없음.

- (위원) 금감원은 ×개의 행위를 건별로 제재했고 그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고 회사 측은 포괄해서 하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형사법으로 하면 포괄일죄와 유사한 규정이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에 있음.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규정의 동일성 등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신데 이 사안이 그 요건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 (보고자) 개별 펀드 각각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별 펀드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음. 그리고 만약 한 펀드에서 여러 번의 총액인수수수수료를 일시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 있다면 합산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각각의 펀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건별 부과가 맞다고 생각함.

- ▶ (진술인) 이 부분은 ×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있는 ×개 펀드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회사로서는 1개의 회계처리방식에 따라서 처리를 했었던 부분임. 이 부분이 행위의사의 단일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음. 시간적 근접성이나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저희가 규정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본건을 '고의'나 '중'이라는 위반동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어떻게 보면 이슈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음. 총액인 수수료를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연상각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인 것인데,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금감원 감독행정작용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 특별히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 딱 특정을 지었음.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서 하는 관련된 펀드가 전부 특별자산펀드인 것 같은데, 부동산·특별자산펀드라고 딱 특정을 지었고 감독행정작용에 아까 대리인에게서 읽어주신 그 내용인데, 저도 이 내용에 과연 총액인수수료가 들어갔느냐? 저는 아닌 것 같음.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급비용으로 인식을 하려면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감원과 대리인이 적용하는 것이 다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선급비용으로 인식을 하려면 부동산 등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발생 즉시 비용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뒤집어보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부동산 등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됨. 결국 펀드구조에서 보면 부동산 구입에 직접 관련된 것은 자산운용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액인수하는 것은 펀드를 모집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펀드 모집하는 것이 부동산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가 있느냐임.

- ▶ (진술인) 이 부분이 관련이 있느냐 하는 명확한 설명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음. 다만, 이 프로젝트펀드에 있어서는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증권사가 총액인수를 하는데 총액인수수료는 증권사의 총액인수로 발생하고 이 부분이 있어야만 투자자산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회사에서는 본건을 이연상각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부분임. 관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명확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음. 다만, 회사에서는 이런 연결성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했음.

○ (위원) 총액인수수료가 부동산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총액인수수료를 받은 부분이 부동산에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애매하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거래상대방인 총액인수수료를 수취한 증권사는 그 총액인수수료를 일시수익으로 인식하므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일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지?

▶ (진술인) 거래상대방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본건 일시 비용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함. 거래상대방에서는 인수총액수수료를 받는 시점에 그냥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의 총액인수수료 지급 부분은 결국 투자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선급비용으로 한 후에 이연상각하는 방식이 맞다고 처리할 수도 있어 보임. 이 부분을 증권사 입장과 펀드의 입장을 동일하게 해서 일시 비용과 일시 수익으로 대응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

○ (위원) 그러면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은 본건 펀드 이후에

발생한 총액수수료는 왜 전부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셨는지?

- ▶ (진술인)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 리스크관리팀장 ☒☒ ☒임. 대리인께서 주장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불 명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기존의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되 업계의 다른 사례들을 계속 확인하는 중에 있었음. 그것을 확인하던 중에 20××년말 다수의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바탕으로 이연상각 구조에서 일시 비용처리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점에서 일시 비용처리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던 것임.
- (위원) 그렇다면 다른 운용사들도 동일 건에 대해서 금감원의 감독행정작용 이전에는 다 이연처리를 하고 있다가 이후에 일시 비용처리로 바꿨는지?
-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기관은 아니어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최소한 총액인수수료가 발생한 과반 이상의 회사들은 이연상각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지도 이후에는 서서히 일시 비용처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음.
- (위원) 지금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서는 총액인수수 수료를 자산취득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무튼 2017년 7월에 이 감독행정작용을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2017년 7월에 행정작용이 있음으로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총액인수수수료를 그 이후에는 다른 회사들도 다 일시 비용처리했는지? 총액인수수수료를 자문수수료와 동일하게 판매관련 비용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이슈가 있는데, 아무튼 이 행정작용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 (진술인) 타사에 대해서 제가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타사에서도 저희와 동일하게 행정지도의 해석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일부 운용사는 2017년 7월에 감독행정작용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일시 비용처리한 것인지? 이번에 이렇게 조치가 나가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일부 운용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 (보고자) 저희가 3개 운용사에 대해 확인을 했음.

○ (위원) 운용사가 몇 개인지?

- (보고자) 지금 현재 공모운용사가 75개사인데 총액인수수료를 수반하는 이런 펀드를 하는 운용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음. 행정지도 이후에 업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전달한 사례도 없었음.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연상각 부분에 대해 그것을 바꿔서 총액인수수료에 대해서 이번에 일시 비용처리하는 부분으로 다 바뀌는 그런 상황임. 그리고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 회사

자체도 일부 블라인드 펀드도 존재하면서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총액인수수료를 일시 비용 상각처리한 적도 있고 처리 방식이 혼재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때 일시적으로 하지 않았던 ×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음.

○ (위원) 금감원 지침에 따라 타사들은 일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서는 일부 펀드는 일시 비용처리했는데 여기는 왜 이연처리를 했는지?

▶ (진술인) 20××년 ××월부터 일시 비용처리를 했고 그 이전에는 모두 이연상각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음. 다른 회사도 그렇게 회계처리를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음.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도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20××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다른 회사들과 다르지 않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펀드 같은 경우 펀드의 만료시점이 되어야 새로운 펀드가 설정이 될 때 변경될 비용처리 기준을 적용하는지?

▶ (진술인)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 자료 보면 대출취급수수료를 비용처리하다 20××년도에 이연하는 것을 허용을 했음. 대출취급수수료가 총액인수수료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사한지?

- ▶ (진술인) 자금조달수수료라는 측면에서 총액인수수료나 대출취급수수료나 비슷한 성격의 수수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기재한 것임.
- (위원) 금감원은 회사가 얘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연처리 허용해준 것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기간동안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고 이자비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이연상각이 타당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감독행정작용도 변경된 것으로 봐야할 것 같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은행 쪽에서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되어서 대출취급수수료 이연상각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임. 감독행정작용이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출취급수수료의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대출취급수수료와 총액인수수료는 기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가, 용역이 제공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인수수료는 별개로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함.
- (위원) 대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총액인수수료도 자금조달 관점에서 보면 자금을 일시에 조달을 하면서 나가는 수수료이고 대출도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면서 일시에 나가는 수수료로 자금조달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성격이 있음. 그런데 금감원은 그것을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규정을 짓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해석은 약간 혼란을 일으킬 요소가 있을만한 내용임.

- (보고자)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나 대출받는 것이나 전부 다 자금조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펀드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은 자산취득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자금은 전부 다 자산취득과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자산의 집행이나 대출행위와 자산의 취득행위는 별개로 회계단위가 구분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 (위원) 총액인수수료에 대해서 금감원이 설명한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요소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임.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회계처리를 일시 비용으로 하기도 하고 이연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상반되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음. 그다음에 이 ×개 펀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보고자) 20××년 ××월부터 20××년 ××월초임.
- (위원) 포괄일죄에서 시간적으로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지 않은지?
- ▶ (진술인)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회사로서는 하나의 회계처리원칙을 이렇게 잡은 이상 불가피하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위반들은 다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행위들이 발생할 때마다 각 건별로 위반이 잡힌다는 것이 회사로서는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임.

- (위원) 우리가 위반동기를 판단할 때 '중'의 경우에는 '고의' 뿐만 아니라 '중과실'도 포함하는데 그로 인한 어떤 효과, 이득 이런 것이 중요한데 회사는 어떠한 이익도 없다는 것 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이에 반해 금감원은 이것으로 인해 회사가 약간의 이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득이 있는지?

- (보고자) 장기펀드의 경우 운용보수가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운용사 차원에서는 운용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할 유인이 있다고 생각함.

- (위원) 금감원이 얘기하는 대로 실제로 그 규모가 얼마인지?

- (보고자) 가장 큰 펀드가 xxx억 원이고 펀드설정원본의 x% 이고, x.x~x% 수준임.

- (위원)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 약간은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 (진술인) 펀드운용 전체 기간을 생각하면 운용보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초기에 운용보수가 높게 잡힌다고 해도 결국 펀드 전체 기간에는 차이는 없음. 그리고 초기에 많

이 잡히는 운용보수도 회사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보수의 차이가 전혀 없음. 그리고 나머지 펀드의 경우에도 회사 전체의 자산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미미한 수준으로 생각이 됨.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운용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펀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전혀 아님.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던 것이지, 이런 부분이 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이지, 운용보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회계처리를 한 것은 전혀 아님.

○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억 원을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와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금감원에서는 순자산가액의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면 ×××억 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것이 수수료의 기반이 됨. 그런데 자꾸만 인수수수료가 더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는지?

▶ (진술인) 운용보수 관리로 설정하는 것은 맞음. 다만, 자산화로 인한 운용보수 증가 자체의 금액이 크지 않고 저희가 지금 계산한 바로는 ×개 펀드 중에 ×개 펀드에는 운용보수 산정방식이 순자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보수의 증가가 전혀 없음. 그리고 지금 ×개 펀드 중에 ×개를 제외한 ×개 중에 ×개 펀드는 운용사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 펀드를 확인한 결과 운용보수 증가분은 펀드 설정 이후에 누적 기준으로 ×.×억 원 정도임. 그래서 연간기준으로 ×,×××만 원 정도의 운용보수 증가는 있었으나 저희 회사의 매출구조나 순이

익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 운용보수 증가를 위해서 이런 회계처리를 한 것은 아님. 그리고 또한 총액인수 기관이자 수익자인 대형증권사들도 저희 회계처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인 유인으로 이런 회계처리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회계적인 기준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한 이후에 나온 부수적인 효과이자 크지 않은 효과로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음.

○ (위원) 감독행정작용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 (보고자)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기관이 개별 규칙을 제시하는 것임. 그래서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함. 반면에 행정지도는 법규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써 그 성격이 다름. 그래서 감독행정작용은 법령에 기준이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음.

○ (위원) 2017년 7월에 감독행정작용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발효(發效)되는 것인지?

- (보고자) 감독행정작용에 대해서 업계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이 2017년 7월18일임. 그 이후의 회계처리에 대해 준수하지 않은 부분은 위반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음.

○ (위원) “그 이후”라는 것이 그 시기 중에 펀드가 이미 설정

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이 있고 새로 설정되는 것이 있고 만료되는 것이 있고 시기라는 것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는지? 결국 그 말씀은 2017년 7월 감독행정작용이 있고 난 이후에 새로 모집된 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양쪽 모두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을 준수했다고 하는데, 진술인 측은 금감원에서 말하는 일시에 비용 인식하는 것이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보는지?

▶ (진술인) 저희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회사는 당시로서는 이연상각방식이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일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일시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음.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는 한데 다만 그때 2017년에 위반행위를 하는 시기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제재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회사에 대해 선처해 주실 부분이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임.

○ (위원) 이것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고 증선위에서 어떤 제재가 한 번 나가게 된다면 이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술인과 금감원에 동시에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청 드리는 바임. 회계처

리와 관련해서 원칙과 실제 회계처리의 양상을 2017년 7월 감독행정작용 이전, 2017년 감독행정작용 이후부터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서 일시 비용처리를 한 20××년 하반기 정도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렇게 기간을 나누어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은 원칙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으며 실제 펀드에 대해서 회계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표본으로서 유의미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이 기간을 나누어서 각각의 기간에 총액인수수료를 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들을 유의미한 숫자의 자산운용사 펀드에 대해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음.

- (참여자) 2015년 이후에 회사가 총액인수수료를 지급한 펀드가 10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7개를 위반사례로 적시한 이유는 2017년 7월 감독행정 이후 것만을 위반사례로 한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의결안건 제75호 안건은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금감원에 요청사항이 있으셨으므로 그 요청사항을 보고 다음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늘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 행정지도한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에 있

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음. 이 건이 선례가 되다 보니 금감원의 주장, 발생 즉시 비용처리해야 된다는 부분과 회사 측의 이연상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해석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함.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고생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 같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말씀에 동의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하는 것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64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보고함.

○ (위원) 저는 ○○○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前대표이사와 같이 '검찰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원) ○○○의 진술서를 읽어봤는데 사장이 부하 직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녹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했는데, 前대표이사한테 유리한 것만 녹취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슈임. 두 번째는 1월29일에 前대표이사는 ○○○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는 13억 2,000만 원을 추가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서에 나와 있음. 2월6일 보고도 마찬가지임.

결국 그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질심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보면 둘 다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임. ○○○도 함께 '검찰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원) 원래는 前대표이사만 검찰통보였는데 어쨌든 회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사람은 ○○○이었고, 사실과 관련해서는 두 의견이 충돌되고 있으니 두 사람을 다 검찰통보 하면 검찰에서는 강제수사력이 있으니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위원장) 제64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회사의 '고의' 지적사항은 회계담당부장이 회계기록(연령분석표)을 직접 조작하여 위법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사업보고서 신고업무담당자로 서명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등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오류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계담당부장(○○○)도 검찰통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보고안건 제9호 『○○○○년도 ○○○○○○ ○○ 및 ○○○○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표준감사시간 도입 및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감사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회계감독도 그런 내용에 비추어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거와 크게 차별점을 느끼지 못하겠음. 2020년의 계획과 실제로 실행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21년의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를 보고해 주기바람. 어쨌든 회계감독도 선제적인 감독이 되어야 됨.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자본 M&A, 사모펀드 자금 유치기업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보임. 그 다음에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공시 쪽과의 연계를 더욱더 강화해서 공시 부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감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실제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회계감독 기능도 앞서 나갔으면 좋겠음. 다음에 2020년에 대해서는 실적분석과 더불어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저는 적발건수의 관점보다 어떻게 선제적으로 회계감독을 시행해서 부실이나 분석의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감리해서 시장에 미리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보고안건 제9호는 원안대로 접수하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감리결과 분석평가 등에 대해서 증선위에 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10호 『○○○○○○○○의 ○○○○회계연도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조직개편의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음.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와 품질관리 쪽을 강화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상당부분의 인원이 심사 쪽에서 품질관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품질관리 쪽의 사업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품질관리감리본부의 업무계획에 감사인 감리부분이 회계법인 20개사, 감사반 20개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와는 별개로 등록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업무를 추가적으로 10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함.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업무 같은 경우 감독대상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수가 많음에도 그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비상근위원을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2021 회계연도부터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전체를 상근조직화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업무수요를 위해 인력을 6명 정도 확대한 것임.

- (위원) 2021년도 계획도 2020년도 변경과 유사하게 흘러가는지?
 - (보고자)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인원충원 계획을 5명 정도 충원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품질관리감리를 한 내용들을 그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지적 사항이 거의 계속되고 개선이 없음. 그리고 품질관리감리가 계속 지적될 때 그것을 개선할만한 유인책을 갖고 있지 않음. 지금 한공회의 감리 방향이 품질관리를 중점으로 가고 심사감리를 축소하는 내용인데,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만한 방안이 있어야 됨. 저는 발전적으로 방향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과거와 동일하게 품질관리감리가 유사하게 이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인 감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보고자) 지금 현재 심사감리본부와 품질관리감독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사실 감독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심사와 감사인 감리가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양 본부에서 소홀하게 하는 부분은 협업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음. 저희 심사감리본부에서 회사에 대한 조치만 하고 감사인 조치하지 않는 부분은 품질관리감리본부에서 우선선정해서 감사인 감리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음. 또한 감사인 감리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더라도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음. 작년도에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된

회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도 병행해서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대폭 축소하고 품질관리감리를 통해서 감사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우리가 선진적·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인데,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만한 수단을 강구해야 함.

- (보고자) 이번에 감사절차 소홀만으로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감사품질이 제고되도록 하고 중요감사절차를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강하게 조치해서 회사에 대한 것도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음.

- (위원) 2020년 것을 전반적으로 조직을 변경시켜서 실행을 이미 하셨음. 그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향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위원장) 한공회 측에서는 오늘 주신 지적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람. 다만, 작년도 감리결과 분석평가를 반영해서 원래 금년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으므로 제10호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020년 감리계획 분석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 증선위에 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11호 『선우회계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를 상정하여 한국 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12호 『○○회계법인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 제13호 『○○회계법인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 제14호 『○○회계법인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 제15호 『예교지성회계법인(舊 회계법인 예교)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 제16호 『○○회계법인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 제17호 『○○회계법인(舊 ○○회계법인)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 제18호 『○○회계법인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 제19호 『회계법인 새시대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 제20호 『○○회계법인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 제21호 『○○회계법인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10건을 일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 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78호 『(주)바이오솔루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79호 『(주)아스트로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80호 『(주)미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81호 『(주)필로시스헬스케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82호 『(주)지앤이헬스케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제83호 『(주)바이오노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사는 반기보고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수령 받고 즉시 공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누락하였음. 당시 본건의 반기보고서는 흑자전환이라는 호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 이후 금감원과 협의를 진행한 한국투자증권(주)의 조언대로 이행하였고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주)의 즉각적인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고

려하여 주시기 바람. 발표업무 실무를 고려할 때 누가 주관이 되어 이끌어 가는지는 사실상 명백하여 당사 역시도 한국투자증권(주)의 인도에 따를 수밖에 없었음.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당사가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깊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음. 당사는 이에 공시 등 관련부분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유통경영업무에 IR공시검토를 포함하는 등 이를 강화했고 더불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시담당자를 채용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였음.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과징금 감면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동 건과 관련해서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지?

▶ (진술인) 저희가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모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 공시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공시업무에 대해 정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음. 특히, 상장 당시에 여러 가지 세세하고 복잡한 업무에 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주)과 계약을 맺고 그 인도에 따라 일을 진행했던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람.

○ (위원) 한국투자증권(주)에서는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람.

▶ (진술인) (주)바이오솔루션 담당할 당시에는 실무팀장을 담당했음. (주)바이오솔루션의 정정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당시 담당팀장으로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발

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저희가 금감원으로 부터 정정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통보 받고 바로 투자자들에게 정정신고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음.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반기보고서 공시 사실을 안내했고 투자설명서 교부가 없는 기관투자자에게도 확인을 받았음. 이러한 노력으로 청약 주식수 기준으로 99.9%에 해당하는 일반청약자에게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안내했음. 투자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애초에 해당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이러한 혼란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 (주)바이오솔루션 공모전 이후 당사에서도 공시 관련된 내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관련 교육 수행, 내부통제 절차 등을 강화했음. 다시 한 번 (주)바이오솔루션의 정정신고서 미제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지금 사후대책으로 청약자들에게 반기보고서를 고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약을 취소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 (진술인) 개별회사 건에 대해 청약을 취소한 사례는 없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렇게 황당하게 공시 위반하는 경우가 있음. 법규를 알면 위반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 대한민국의 대표증

권사에서 총액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장사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저희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겠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사건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어 안타까우며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겠음.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제6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20시17분 폐회)